

목회자 납세논란을 통해 본 교회의 공공성

문시영(남서울대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목회자 납세논란과 교회의 공공성의 문제

1. 목회자 납세논란의 구도와 본질
2. 시민적 공공성에 직면한 교회

III. 교회의 공공성, 이제는 실천이다.

IV. 나오는 말

• ABSTRACT •

Nowadays, taxation on pastors is one of hot issues in Korea. Some people blame pastors as an immoral man who refuse tax-paying. Moreover, some broadcasting company reported the issue as a scandal of church through their special program. Especially, many Koreans tend to misunderstand pastors and Christians as immoral and egoistic.

Of course, there are some moral issues on pastor's tax, including justice of taxation, international practices of taxation, etc. Bu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thics, the issue is not the personal or moral problem of pastors but the problems of Korean tradition of taxation and social policy. According to Reinhold Niebuhr, social problems must be approached through a social method including policy or system on social issues. So, this paper focused on the problem of social policy and institutional factors around the taxation on pastors.

On this base, this paper studied the ethical meaning and task for moral maturity of Korea church. In fact, because of pastor's tax-free tradition of Korea, there were no questions on pastor's civic duty, especially on income tax. But social shift to civil society calls into a moral question on civic duties and morality of pastors. And the core demand of Korea civil society is church's change to be more public. In this context, this paper has deep concerns about 'public theology' of Max L. Stackhouse. He proposed the idea of public theology which overcome the privatization of Christian faith. In this context, this paper focused on public theology also.

Now, this paper concluded that Korea church and pastors has the possibility of ethical maturity in Korea civil society through public concern. Especially, in public theology, Christian have already the possibility and ability to be public. Therefore, public concern and practice for ethical maturity of Korea church must be the most meaningful solution of moral challenge in critical times.

Key words: taxation, social ethics, social policy, public theology, civil society.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목회자 납세문제’를 다루지만, 납세 혹은 조세 당위성에 관한 직접적인 찬반의견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목회자 납세가 논란이 된 배경을 성찰하고 대안 혹은 해법을 모색하려는 사회윤리학적 성찰이다. 어찌 보면, ‘납세’는 하나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그 배경에 교회를 시민적 공공성 앞에 소환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점에서, 교회를 위한 윤리적 모색이 절실한 시기이다. 안타깝게도, 목회자 납세논란의 대부분은 찬성 혹은 반대로 대립적인 의견을 제안하거나 납세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현상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납세논란은 교회에 대한 시민적 공공성의 요구일 수 있다. 현상적인 접근보다 이면에 자리한 본질부터 제대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니버(R. Niebuhr)의 사회윤리학적 통찰을 재음미하고자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 제안한 윤리적 통찰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에 직면한 교회의 공공성 함양을 위한 성찰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II. 목회자 납세논란과 교회의 공공성 문제

1. 목회자 납세논란의 구도와 본질

목회자 납세논란은 새삼스러운 이슈가 아니다. 문제는 시민사회의 막

강한 권력으로 군림하는 공영방송에서 반복적이고 단편적인 취재를 통해 이 문제를 교회비판의 빌미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목회자 납세논란은 교회를 향한 납세의 일방적인 요구가 주를 이룬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사이의 편 가름 혹은 논점을 잃은 찬반토론이 반복되곤 한다. 그 와중에 정작 필요한 절차, 즉 시민사회를 주도할 성숙한 교회를 위한 합리적인 토론이 생략되고 있다.

대략, 목회자 납세에 대한 논변에는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갈등구도가 나타난다. 신중론이나 관망하는 입장이 설 자리는 거의 없어 보인다. 찬반양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을 뿐이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사이에 대결구도가 형성된 것 자체가 굳이 나쁜 것은 아니다. 좀 더 치열하고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목회자 납세논란은 단편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다. 찬성과 반대 사이에 몇 가지 의견대립만 강조되는 듯하다.)

첫째, 소득의 성격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다.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혹은 목회자를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 현행세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입장차이라 하겠다. 찬성론은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목회자 납세가 당위성을 지닌다고 한다. 한마디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대론 혹은 신중론에서는 목회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생활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목회자를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 현행 세법도 그 중요한 논거가 된다. 더구나 목회자가 납세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점을 근거로

1) 목회자 납세논란은 서구신학자들의 문헌을 찾아 인용하기가 쉽지 않은 한국적 문제라는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주제인 듯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뉴스자료들을 참고하여 필자 나름대로 논점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자료를 각주에 열거하지 않았다.

삼기도 한다. 그리고 이미 납세한 교인들의 헌금에서 나온 생활지원비이므로 추가적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에게는 납세를, 교회와 법인에는 비과세를 말하는 관점도 있다.

둘째, 납세와 국가의 간섭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다. 찬성론자들은 목회자 납세를 통한 복지혜택의 수혜가능성을 강조한다. 특히 면세점 이하의 절대다수 목회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가 곧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복지혜택보다 조세권을 앞세운 국가의 간섭을 우려한다. 국가의 교회개입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자율성과 종교적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생각이다. 혹은 납세대상이 되는 소수 목회자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나서 면세점 이하의 절대다수 목회자들을 위해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셋째, 납세에 관한 국제적 관행을 둘러싼 의견대립을 들 수 있다. 찬성론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성직자의 보수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점을 들어 납세를 정당화하려 한다.²⁾ 목회자 납세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 사회에서만 예외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인 듯싶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론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종교재산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확립된 하나의 제도이며 이 전통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³⁾ 말하자면, 반대론은 비과세 전통 자체를 논거로 삼아 찬성론자들의 형평성 논거보다 특수성을 선호하는 셈이다.

2) 배원기, “OECD 회원국 모두 과세 성직자들도 소득세 내야” <중앙일보> 2008.3.12일자 인터넷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071402

3) 김상철, “성직자 비과세 전통 무너뜨려선 안 돼” <크리스천 투데이> 2008.3.21일자 인터넷판.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91137>

특이한 것은, 찬성론과 반대론이 공유하는 영역도 있다는 점이다. 납세의 대상이 되는 목회자들보다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목회자들이 절대다수라는 사실에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해석과 해법에서 의견이 갈라진다. 찬성론자들은 면세점 이하의 목회자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라도 납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납세 가능한 극소수를 빌미로 목회자 전체를 몰아세우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반대론자들에게는 교회몰아세우기와 목회자에 대한 일방적 비판에 대한 거부함 역시 강하게 작용하는 듯싶다.

전체적으로, 목회자 납세에 대한 찬성론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많아진 듯싶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리적인 토론과 진지한 성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방송보도와 시민감정에 휩쓸린 경우도 없지 않아 보인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화와 토론의 여유가 생략된 경우들이 많다는 점이다. 찬성론자들 중에도 반대론자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대론자들 역시 찬성론의 입장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 마디로, 여론과 방송이 그렇다고 하니까 덮어놓고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론 중에도 합리적인 토론 자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듯싶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당사자인 목회자들 뿐 만아니라,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문제이며 더욱이 교회의 구성원들도 우왕좌왕하기 쉬운 문제이다. 필자가 보기에, 목회자 납세논란은 사회윤리학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목회자 납세논란이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졸속한 접근을 넘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풀어쓴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목회자 납세논란은 제도와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목회자

납세는 목회자 개인의 영적, 도덕적 각성을 촉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납세하고자 해도 납세를 위한 제도적 통로가 없다면, 목회자 납세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시민적 양심의 문제로 환원되고 말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납세하면 양심적인 목회자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량시민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특히, 방송을 비롯한 매체들은 목회자 납세문제를 교회비판의 단골메뉴로 삼을 것이고 그 결과 교회와 목회자가 시민적 비난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더구나 제도적 접근이 결말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고의적인 체납자와 납세하지 못하는 목회자 사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자칫 목회자 집단 전체가 납세를 거부하는 자들로 내몰린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나아가 납세하는 목회자와 납세하지 않는 목회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편 가름이 생길 수 있다. 이를테면, 성서해석상의 이유와 교회사적 전통 등을 근거로 납세에 유보적인 목회자들과 시민적 조세정의를 앞세워 납세를 자랑하고 권유하는 목회자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게다가 납세하는 목회자의 윤리적 자기의 (self-righteousness)가 나타나기 쉽다. 과연 납세는 목회자의 자랑거리인가? 말없이 납세하는 목회자는 윤리적으로 탁월하지 못하다는 뜻인가? 무엇보다도, 납세만으로 목회자의 도덕성을 기낼 수 있는 것인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바로 이것이 목회자 납세를 개인윤리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차이를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찍이 사회제도와 정책의 중요성에 주목한 라인홀드 니버(R. Niebuhr)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었다. 니버는 특히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도록 권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이타적 양보와 희생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집단과 집단의 문제가 되면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윤리 문제에는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여 해결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해법에 있어서 제도와 정책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가 있음을 깨우쳐 준 중요한 통찰이라 하겠다.⁴⁾

여기에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구분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윤리적 성찰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어야 할 윤리적 원칙들이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것은 목회자 납세문제가 집단 간의 갈등에 속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문제는 목회자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할 문제도 아니며 조세당국과 목회자 집단이 대립하는 이슈도 분명 아니다. 니버가 생각한 윤리문제 해결의 사회적 방법, 즉 사회의 구조에 대한 접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특히, 제도나 법령의 개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른바 시스템적 접근에 주목해야 한다. 개인윤리적 접근을 통한 도덕적 방법(moral method)를 넘어 사회윤리적 혹은 정치적 방법(political method)에 유의해야 한다는 뜻이다.⁵⁾ 정치적 방법이라는 것은 정치영역에 관한 논의라는 뜻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혹은 법령과 관련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⁶⁾ 이것을 롱(E. L. Long)의 용어대로 말하자면, 사회정책의 문제(social policy matters)라고 할 수 있겠다.⁷⁾

이러한 접근법을 목회자 납세논란에 응용해 보자. 목회자 납세논란은 구도상 목회자 개인의 양심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문제

4) 고범서, 『사회윤리학』(도서출판 나남, 1993) 48면

5) Niebuhr, 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Y: Charles Scribner's Press, 1932) p. x xiv

6) 고범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132면

7) Long, E. L. Jr., *A Survey of Recent Christian Ethics*(NY: Oxford Univ. Press, 1982) p.145

로 인식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납세를 강제하는 법률과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목회자 개인의 양심을 문제 삼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실제로, 납세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의 목회자 중에 고의적으로 체납하거나 납세 자체를 회피할 목회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적어도 목회자의 개인양심이 그 정도 이상의 수준은 되리라 순진하게 기대해 본다.

만일 목회자 납세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납세하지 않았다면, 목회자 개인의 도덕성을 문제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맥락은 제도 자체가 없는 정황이다. 제도의 개선이나 변경을 말할 단계조차도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교회비판세력이나 공영방송 목회자납세 문제를 제대로 이슈화하려는 했다면 목회자를 몰아세기보다는 오히려 조세당국이나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았어야 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목회자에게 왜 자진납세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는 어설픈 모양새에 갇혀 있는 셈이다.

둘째, 목회자 납세논란은 교회비판이 아닌 합리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는 사회변동과 연관이 있다. 목회자의 소득을 면세하던 한국적 조세전통이 사회변동에 따라 시민적 요구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적 비판이라는 날카로운 칼로 교회를 위협하기보다 절차상의 합리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찬반 양론간의 충분한 토론과 자발적 동의를 위한 합리적 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내부의 의견을 정리하고 시민사회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납세문제해결을 빌미로 목회자에 대한 일방적인 몰아세우기나 교회비판을 일삼거나 주기적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교회비판을 정당화하려는 측에서는 납세문제의 제기를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할지 모

르나, 필자가 보기에, 비판을 통한 접근은 감정적 대립 혹은 교회에 대한 일그러진 이미지를 낳을 수 있다. 한 마디로,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 만일, 납세 가능한 소수의 목회자를 향한 비판과 질타가 교회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왜곡을 낳는다면, 이것은 분명 수단의 과잉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시사고발이 교회 내부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 그들의 보도는 단편적인 폭로나 왜곡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프로그램에 협조하는 교회 내부의 세력에서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읽을 수 있도록 조언하고 바로잡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건만, 목회자 납세에 관한 방송취재에 오히려 적극 협조하거나 그들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도만 있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 역시 정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회자 납세논란은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야 한다. 자진해서 납세에 참여하는 목회자는 양심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사회적이라고 몰아 세우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목회자 납세문제를 단정적으로 예단하여 신속히 결정지으려는 성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이 문제에는 다양한 교회내적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 납세를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들을 충분하고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목회자 납세논란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을 예로 들자면, 우선 목회자 중에 납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교단의 본부나 기관, 그리고 학교에 종사하는 목회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일반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자진 납세를 실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자신납세를 드러내어 말하는 부류와 말없이 납세하는 부류가 있을 뿐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목회자 납세논란을 결론짓기 위해 성서적 기초, 교회사적 전통, 그리고 사회변동에 따른 시민사회의 요구 등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목회자 역시 한 사람의 시민이요 권리의 주체이다. 시민으로서의 목회자들에게 시민사회로의 사회변동을 인식하게 하며 자율적 동의를 통한 납세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이 시민적 납세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기만 한다면 굳이 비판을 받아가면서 납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목회자들의 입법청원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시민적 의무를 감당하려 할지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가 보기에는 여론의 못매보다 목회자 집단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기다림이라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나아가, 납세를 제도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의 납세 절차 혹은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목회자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납세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에 별도규정을 만들어 성직의 존중을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⁸⁾ 물론, 어차피 납세할 바에는 굳이 특별대접을 받으려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납세의 제도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방법론 자체를 획일화할 필요는 없다. 그런가하면, 목회자들을 위한 납세조항을 만들어 납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⁹⁾ 요컨대,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목회자 납세논란을 사회윤리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

8) 유지해, “당국도 논란 중, 성급한 동조 곤란” - 최성규, “교회, 사회 모두 인정할 방안 마련” <한국기독교공보>(2008.3.29일자)

9) 배원기, 앞의 글.

는 이유들은 지금까지 정리한 두 가지 정도의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목회자 납세논란은 목회자 개인의 양심을 문제 삼는 개인윤리적 논제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이다. 더구나 납세를 정당화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다양한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도 먼저 목회자 그룹 안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세무전문가를 비롯한 정책당국자, 그리고 이 문제에 바른 관심을 가진 정치인들의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시민적 공공성에 직면한 교회

필자가 목회자 납세논란에 주목하는 진정한 이유는 납세제도의 개선 그 자체가 아니다. 이 논란의 배경에 더 큰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교회를 향한 시민적 공공성의 거센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과연 목회자 납세제도가 시행되면 교회를 향한 논란들이 종결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naive) 기대일 뿐이다. 목회자 납세논란은 납세라는 가장 민감한 공공의 언어를 교회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납세논란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다. 앞으로 교회는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거센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세권을 앞세운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 그렇고, 재정의 투명성 문제 등 교회비판세력의 거센 요구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을 결정적인 호재로 삼는 안티 기독교 세력의 무차별적 공격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를 향한 시민적 공공성의 요구와 교회비판의 목소리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찌 보면, 이는 교회를 시민적 공공성을 위한 공론영역에 소환하는 것에 다름없다. 교회를 공공의 이름으로 다루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작, 교회는 과연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보면, 교회는

아직 공공성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게 느끼는 단계에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교회에 유예기간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공성의 잣대를 더 철저하게 적용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더욱 다그칠 것이 분명하다. 목회자 납세문제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교회의 문제를 신앙인 아닌 시민의 이름으로 단죄하듯 몰아세우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한국교회는 이 질문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적 공공성이라는 개념에 직면하여 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질문에서는 교회에 대한 시민적 간섭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일찌감치 생략되어 버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관한 진지한 성찰이 시작되어야 할 듯싶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우리의 안타까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공공성의 잣대로 평가하는데 주저함이 전혀 없다. 과연 시민적 공공성이란 무엇이기에 교회를 이토록 몰아세우는 것일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시민을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기도 한다.¹⁰⁾ 혹은 ‘예속적인 인간이 아닌 자율적이며 스스로 행동하는 주체적 행동을 하며 소신껏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창조적인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가는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¹¹⁾ 이러한 시민개념은 다시 ‘국가 - 시장 - 시민사회’라는 최근의 3분 모델과 연관된다. 정부의 통치활동이 일어나는 정치사회 영역으로서 국가, 이윤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주체들의 활동공간인 시장, 그

10) 이승훈, <시민사회 사상의 역사와 딜레마>, 굿미션네트워크 편, 『시민사회속의 기독교 회』(예영, 2008), 45면

11) 권진관, ‘21세기와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운동’ *이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활용했음을 밝힌다.

리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결속, 토론과 합의, 그리고 사회운동의 영역으로서 시민사회가 그것이다.¹²⁾ 그리고 이 구도에서, 시민과 시민사회는 종교까지 시민적 잣대로 평가하고 공공성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민사회가 교회를 들여다보는 관점 사이에 괴리가 크다. 교회로서는 시민적 공공성이 요구하는 주제들은 물론이고 용어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설사 시민적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전략적 접근에서 어설픈 경우가 많다. 시민사회가 교회를 문제시 할 때마다 적절한 대응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사회에 미숙한 탓에 어설픈 대응하면 할수록 교회는 시민사회로부터 호된 비난에 휘말려 들기 십상이다.

교회는 과연 시민사회의 시민성에 턱없이 부족한 집단일 뿐인가? 안타깝게도,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사회적 세력은 증대되었지만, 사회적 신뢰도는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납세를 비롯한 공공성을 구현하려는 시민적 비판에 직면하는 안타까움이 한국교회의 현주소인 셈이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지금 공공성에서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시민사회에 등 떠밀려 공공성을 말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주도해야 마땅하지만 어느새 시민사회에 ‘등 떠밀려’ 공공성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세력은 증대되었지만, 사회적 신뢰도는 그에 따르지 못하고 납세를 비롯한 시민적 공공성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교회는 시민사회와 시민에게 끌려 다닐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휘둘릴 필요도 없다. 비록 관심과 실천이 따르지 못했지만, 기독교는 이미 시민적 공공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우리는 특히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사적 영역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신앙을 사적인(private)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신앙인은 국가정책이나 사회적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신앙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시민이다. 정교분리의 원칙 역시 마찬가지이다. 종교를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비롯한 누구로부터도 침해될 수 없는 신앙고백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원칙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신앙의 사유화 혹은 사사회(privatization)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정치, 경제, 역사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로 고백해야 함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공공성은 시민사회만의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신앙의 본질적 속성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초월적 영성에 기초하여 시민적 공공성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교회는 목회자 납세논란과 같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필자는 스택하우스의 관점을 응용하여, 교회와 신앙인이 우리시대의 진정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청지기정신을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이다. 교회는 넓은 의미의 청지기 개념을 가르쳐야 하고 오늘날 정치경제의 문제들에 가이드를 주어야 한다.¹³⁾ 공적인 삶(public life)을 신학의 주제로 삼고 현대의 정치-경제적 구조(the political-economic structures)를 다루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¹⁴⁾

안타깝게도, 스택하우스의 지적처럼, 신앙인들이 교회 밖의 공공영역

13) Stackhouse, M.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ics* (Univ. Press of America, 1991), p.14

14) Ibid., intro. ix

에 속하는 일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 원인은 청지기 정신에 대한 이해가 소극적이거나 좁은 의미에 그치는 데 있다. 청지기 개념을 적극적이고 넓은 의미로 확대적용해야 한다. 경제, 정치, 테크놀러지에 이르는 사회의 분야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시대정신 또는 윤리적 사고방식의 변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사상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는 공공의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목회자 납세논란을 일회성 주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시민적 공공성의 요구 앞에 교회를 윤리적으로 무장시키고 성숙시켜야 한다. 신앙의 사사화(privatization)를 극복할 공공성과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다.¹⁶⁾

3. 교회의 공공성, 이제는 실천이다.

시민적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시장영역을 넘어 이제는 교회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정능력까지 상실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와 이랜드 사태를 정점으로 기승을 부린 안티-기독교세력의 비난을 보면서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토록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지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더구나 공영방송을 통해 거칠게 제기된 목회자 납세논란은 교회를 시민적 의무도 다하지 않는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공공성의 자각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오늘처럼 교회가 언론을 통해 매도되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다. 교회의 자정능력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회의이기 때문이

15) 문시영,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담긴 윤리적 통찰’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북 코리아 2007) 96~109면

16) 정재영,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교회 공공성의 회복> 굿미션네트워크 편, 『시민사회의 기독교회』(예영, 2008) 97면

다. 과연 교회는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는가? 필자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그렇게 단정짓는 부류가 있을 뿐이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다. 게다가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세력에게도 공유된 단정적 평가일 뿐이다. 정작 우리가 성찰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자정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과제이다. 아직 시민성의 개념조차 준비되지 못한 교회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포문을 열어버린 시민사회의 요구에 교회는 과연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 것일까?¹⁷⁾

안타깝게도, 목회자 납세논란을 둘러싼 여론재판을 두고 볼 때, 조세제도와 정책의 개선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오히려 목회자와 교회가 덩달아 여론의 질타를 받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이 일을 계기로 교회의 내부분열에서 비롯된 고발과 제보들이 공영방송에 줄을 잇기도 했다. 교회비판 프로그램이 시청률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특이하다. 혹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혹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보지는 심정으로, 아니면 교회비판을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경우들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에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기독교인이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모른다. 반대로 방송에 휘둘리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무시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교회비판은 결국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필자는 교회의 시민적 공공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교회비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왕에 교회가 공공성을 위해 밖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교회의 공공성 확보

17) 문시영, ‘교회, 시민적 공공성에 익숙한가?’(북 리뷰) <목회와 신학>(두란노서원, 2008.5 월호)

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에게 등 떠밀려 개혁해야 할 정도로 자정능력이 바닥났다고는 단정 짓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대처에 너무나 미숙하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불매운동 운운하며 언론에 대한 무기력한 구호를 남발하고 있는 수준이다. 방송토론에서도 준비되지 못한 답변을 늘어놓아 빈축만 사고 있는 정도이다. 이는 역효과로 돌아오거나 교회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데 악용될 뿐이다. 한 마디로, 교회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에 전혀 준비 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공공성에 미숙하여 당혹스러워하는 교회에 비해 교회비판세력은 일정부분 전략적 성공을 누리고 있는 듯싶다. 사회운동가 그람시(A. Gramsci)의 용어를 응용하자면, 문화적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유한 것이 분명하다. 대중매체를 등에 업고 교회개혁이라는 아젠다를 선점함으로써 교회비판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매체의 비판적 보도를 환영하는 사회분위기도 여기에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 문제에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방어능력조차 준비되지 않은 탓에 매체가 이끄는 대로 교회비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필자가 보기에, 교회갱신을 명분으로 하는 교회비판은 아젠다의 선점과 헤게모니의 쟁탈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교회 전체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어찌 보면, 교회비판만으로는 교회의 자발적 공공성 구현에 역효과를 낳거나 교회의 공공성을 향한 역량 자체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거절당하는 공동체로 전략하게 될 경우, 공공성을 위한 노력 자체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교회비판보다 교회의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실천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에 기초한 공공신학적 관심을 실천하게 하지는 뜻이다. 그것이 교회 몰아세우기보다 훨씬 더 영향력있는 공공성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저작권과 관련된 공공성의 확보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교회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당한 저작권보장 및 찬양악보를 비롯한 교육용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존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용 소프트웨어를 교단이나 대표성있는 기관에서 일괄구매한 후 다중이용에 관한 계약을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교회들에 재보급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그 방법의 하나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회의 공공성을 연습하고 그 가치를 함양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교회출석인원 및 헌금통계의 양심적 처리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통계라는 것이 부풀리기의 유혹에 직면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교세통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매주일 교회주보를 통해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하겠다. 굳이 교세를 과시하거나 목회의 성과를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교세통계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며 양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가령, 출석교인 통계나 헌금자 명단은 정기제직회나 공동의회 등에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좋겠다. 개인의 경우, 헌금영수기라는 것은 결국 연말정산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는 부분이므로 굳이 매주 주보의 지면을 채울 필요는 없을 듯싶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도 공공성을 위한 교회 내부의 노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가하면, 교회주보나 홍보물 혹은 홈페이지 등에 표기되는 목회자의 학위나 학력에 관한 사항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사실, 교회

18) 교회의 공공성 실천방안으로 시민운동을 통한 참여를 말하는 것도 중요한 통로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학적 배경에서 혹은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다행스러운 대목이라고 본다. 필자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성 구현을 위한 교회 안에서의 실천에 관한 것이며, 이는 교회의 자기성찰과 교회에서의 목회적 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 하겠다.

의 성장과 부흥은 목회자의 학위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중심성에 있다는 것쯤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목이다. 목회자의 수준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교인들의 심리도 문제이겠지만, 이를 명문으로 목회자가 학위에 집착하는 것 역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허위학력에 대한 검증여론이 비등했을 때, 목회자들의 학위도 지목의 대상이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굳이 학위를 표기하는 것이 반드시 덕스러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듯싶다. 이 점에서 교회는 투명성 또는 정직이라는 시민적 공공성을 연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주일 및 집회마다 반복되는 지역주민들과의 주차갈등 역시 교회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공공성의 실천과제이다. 특히 도로를 점유하여 주차하거나 지역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의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교회에 대한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 교회입장에서는 ‘주일 한 번’이지만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반감을 가진 시민들에게는 불만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교회에 탈(脫) 자동차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¹⁹⁾, 이보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듯싶다. 가령,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기간제로 계약하여 사용하거나 인근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해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차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교회에서 유발되는 도로점유는 단순히 투자비용의 문제를 넘어 공공성 구현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그 밖에 교회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일부에서는 교회의 재정투명성을 위해 교회의 의사결정 구

19) 김광건, ‘후기 자동차 사회의 도래’(해외잡지 읽기) <목회와 신학>(2008.4월호) 176~179면 참조

조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교회의 구조개혁을 일 반화시켜 시민적 잣대로 강요만 할 것은 아닌 듯싶다. 교회 나름의 교회 정치 전통이나 신학적 배경을 무시하거나 일거에 변혁시켜 시민적 기준 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는 본질상 시민단체가 아니라 은 혜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에서 교회비 판보다 교회의 실천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IV. 나오는 말

한국교회는 시민사회로부터 공공성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목회자 납 세논란은 그 주제의 하나일 뿐이다. 교회에 대한 비판은 목회자 납세문제 가 종결된 이후에 오히려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목회자 납세의 촉구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실천적 실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민사회는 교회 를 향하여 납세 뿐 만 아니라 공공성의 구현을 요청하거나 시민적 기준에 따른 교회를 맞추려 시도할지도 모른다.

순진하게도, 한국교회가 공공의 영역과 공공성 그 자체에 무지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회는 이미 탁월할 공공성 의 저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여 비 판과 폭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무언가 잘못 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교회의 공공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도 교회비판이라는 소극적 방법을 넘어 교회 안에서부터 공공성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Long, E. L. Jr., *A Survey of Recent Christian Ethics* (NY: Oxford Univ. Press, 1982)

Niebuhr. R.,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Realism* (NY: Charles Scribner's Press, 1953)

Niebuhr. 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Y: Charles Scribner's Press, 1932)

Stackhouse. M.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ics* (Univ. Press of America, 1991)

Stackhouse. M. L., *Creeds, Society, and Human Rights* (William Eerdmans Pub., 1984)

Stackhouse. M. L., *Covenant and Commitment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고범서, 『사회윤리학』(도서출판 나남, 1993)

고범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문시영,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담긴 윤리적 통찰' 세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북 코리아 2007)

이승훈, <시민사회 사상의 역사와 딜레마>, 굿미션네트워크 편, 『시민사회속의 기독교회』(예영, 2008)

정재영,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교회 공공성의 회복> 굿미션네트워크 편, 『시민사회속의 기독교회』(예영, 2008)

*기사 및 인터넷 자료

김광건, '후기 자동차 사회의 도래'(해외잡지 읽기) <목회와 신학(2008.4월호)>

김상철. "성직자 비과세 전통 무너뜨려선 안 돼" <크리스천 투데이> (2008.3.21일자/인터넷판)

권진권, '21세기와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운동' *<http://hwojoong.hihome.com/jsp/board2>.

문시영, '교회, 시민적 공공성에 익숙한가?'(북 리뷰) <목회와 신학> (2008.5월호)

-----, “종교인 납세 재론, 문제있다.” <기독공보> (2008.2.16일자)

배원기, “OECD 회원국 모두 과세 성직자들도 소득세 내야” <중앙일보>
(2008.3.12일자/인터넷판)

유지혜, “당국도 논란 중, 성급한 동조 곤란” <한국기독공보> (2008.3.29일자)

최성규, “교회, 사회 모두 인정할 방안 마련” <한국기독공보> (2008.3.29일자)

논문접수일: 2008. 4. 23

심사개시일: 2008. 5. 29

심사완료일: 2008. 6. 10